

◎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-53호

「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」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10명 및 단체 2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2인을 추가 지정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법령정보/고시/공고/훈령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